



한 의 과 대 학 교 육 과 정 통 합 내 규

2024.02.

경희대학교 한 의 과 대 학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통합내규

시행일 : 2024.02.29

소관부서 : 한의과대학

제1장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평가

제1조(명칭)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목적)

제1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주요 보완 사항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 ①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사명, 교육과정, 학생의 향상 정도, 교육성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핵심 측면,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나타내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자료수집과 SWOT 분석 등의 분석 방법을 포함한다.
- ②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는 프로그램 구조, 구성, 기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주요 개선점은 의도한 교육성과에 대한 미달 사항을 말한다.
- ④ 교육프로그램 평가 체제는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규정, 내규, 지침 등이 있고, 이를 실행하는 담당 기구(교실, 실, 학과, 또는 센터)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및 이해관계자)

- ①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의 인증은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 ② 교육프로그램 평가활동은 한의학교육실 평가부가 실행한다.
- ③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학장, 교육과정위원회, 보직자, 평교수, 학생대표 등이다.
- ④ 교육프로그램 평가의 기타 이해관계자는 졸업생, 본부 보직자, 직원 대표, 한의학 관련 기관, 보건 의료 당국 등이다.

제5조(내용)

- ① 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평가 결과로써 정기보고서와 수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② 교육프로그램 평가에는 과정성과(과목별 성과) 수준에서 사명에 따라 결정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교육성과의 도달률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다.
- ③ 교육과정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정기적 평가에는 프로그램 구조, 구성, 기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활용 등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다.
- ④ 교수자(교강사, 전공의 등)와 학생의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선점과 개선계획에 대하여 교수자와 학생에게 공유할 수 있다.
- ⑤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에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교육프로그램 평가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졸업생 수행능력 평가와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활용)

- ① 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교강사, 행정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해진 범위, 방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파악한 주요 개선점 및 약점, 문제점 등을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교육과정 개선 계획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과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수자의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7조(재정)

한의과대학은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한의과대학 교과목

제8조(목적)

제2장은 한의과대학(이하 본 대학)의 교과목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원활한 운영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교과목 설계의 원칙)

- ① 본 대학의 교과목은 학생·교수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의도적 교육성과, 학업성취도 평가법, 교육방법 및 형성평가 방법, 수업일정과 성과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성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본 대학의 교과목은 학생·교수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평가의 방법·종류 등을 밝히고, 해당 학생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교육성과를 안내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한다.

제10조(교과목 구성의 원칙)

① 본 대학은 교과목 구성 시 학생이 한의학 전통을 바탕으로 융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

② 본 대학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전인적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플립러닝, 임상시연 등 별도의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은 학생이 한의학 원리에 기반한 의학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1. 기초의학
2. 임상의학
3. 임상준비
4. 임상실습

④ 본 대학은 학생이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윤리를 준수하는 보건의료의 사회적 책무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인문학 관련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 본 대학은 학생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기초-임상을 아우르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통합과목 및 전공선택과목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학생평가의 원칙)

① 본 대학의 교과목은 학생평가를 통하여 한의학대학 교육성과에 기반한 지식, 술기, 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의 교과목은 지식, 술기, 태도별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최소 3개 영역 이상 활용하여 학생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대학의 교과목은 꾸준히 학생평가의 유형과 횟수를 조정함으로써 한의학대학 교육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평가)

① 본 대학은 임상실습 수업이 종료되는 학기에 학생들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교육 역량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본 대학은 임상실습 수업이 종료되는 학기에 학생들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술기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피드백)

① 본 대학은 학생·교수의 균형 있는 학생평가 피드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생평가 자료를 수집한다.

② 본 대학은 학생평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1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 결과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학생·교수 간 소통을 위하여 학생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개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방향 등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개선한다.

제15조(한의학대학 전공필수 교과목)

① (기초의학)

1. 임상의학을 익히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과학적 지식,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한의학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통에 따라 원전학, 의사학,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진단학, 예방의학, 해부학 등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3. 한의학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의학통계 등으로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단, 진단학은 임상의학 교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기초의학에서 학습한 지식,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이 임상의학 학습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5.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초의학 교과목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② (임상의학)

1. 졸업 후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의 충분한 지식과 임상술기, 기본술기를 포함한 임상실습 교과목을 운영한다.
2. 한의학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통에 따라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임상추론, 치료계획, 시술, 검사, 응급 진료, 처방, 치료 등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3. OSCE는 10개, CPX는 10개 항목 내외로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4. 한의학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한의원, 보건소,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병동) 등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환자진료 참여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5.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임상의학 교과목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③ (임상준비)

1. 한의학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환자면담 기술, 안전교육, CPX 및 OSCE의 개괄적인 소개 등으로 구성된 임상의학입문(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ICM)을 교과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임상준비를 수정하고 보완한다.

④ (임상실습)

1. 한의학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통에 따라 임상실습에 1차 진료와 밀접한 임상분야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2. 한의학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대학 내부 임상실습을 40주, 32시간/주 운영할 수 있다.
3. 한의학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통에 따라 한방내과학, 침구과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의학, 한방재활의학 등으로 임상실습을 구성한다.

4. 한의과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외부실습 기간 등의 제44조 2항에 따른다
5.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임상실습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제16조(한의과대학 전공 의료인문학 교과목)

- ①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자질과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타 분야와 긴밀히 관련된 의료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한의학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전통에 따라 의료윤리, 의료법규 등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 ③ 한의과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소통에 관한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 ④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의료인문학 교과목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제17조(한의과대학 전공 비필수 교과목)

- ① 통합과목
 1. 한의과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이 수평통합¹⁾된 교과목을 3개 이상 구성할 수 있다.
 2. 한의과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기초의학, 의료인문학, 임상의학이 수직통합²⁾된 교과목을 1개 이상 구성하되, 임상의학 및 임상실습 교육이 진행되는 학년에 배치할 수 있다.
 3.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통합과목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 ② 전공 선택 과목
 1. 전공 선택 과목은 예과 과정에 10개 이상, 본과 과정에 30개 이상을 개설할 수 있다.
 2.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공 선택 과목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제18조(학생평가와 종합평가)

학생평가

1. 수시시험은 학생들에게 학업 성과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성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본 대학의 교과목은 필요한 경우 표절방지 시스템을 학생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3. 한의과대학 교육성과에 따라 본 대학의 지식, 술기, 태도별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종합평가 시행세칙)

- ① 임상교육 역량 종합평가는 CBT(Computer Based Test)로 시행하며, 시험 유형은 「한의사 국가시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할 수 있다.
- ② 임상술기 종합평가는 별도의 학점을 배분하여 과목으로 편성한다.

제20조(학생평가 피드백)

- 1) 수평통합(horizontal/concurrent integration)이란 교육과정의 특정 학년 혹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과목 혹은 주제 간 통합 강의를 말한다.
- 2) 수직통합(vertical/sequential integration) 교육과정의 다른 학년 혹은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한의학 기초와 임상의학 과목이 통합된 임상 통합과정을 의미한다.

- ① 본 대학은 매학기 말 시험횟수, 문제유형, 점수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시험 결과는 제1항의 각호의 내용과 함께, 아래의 세부 내용을 고려한다.
 - 1. 교과목이 과도한 양의 정보 학습(지나치게 잦은 시험횟수, 시험문제 대비 지나치게 짧은 시험시간, 시수 대비 지나치게 넓은 시험범위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2. 교과목이 무리한 교육과정(강의계획서와 다른 수업 내용,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시험문제 출제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 3. 교과목의 시험 운영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학생의 시험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한다)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
- ③ 본 대학의 교과목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학기 시험횟수와 유형 등을 조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다.

제21조(학생 피드백)

- ① 본 대학은 시험점수 등 학생평가의 결과를 어느 하나 이상의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시험점수
 - 2. 등수
 - 3. 시험문제 풀이
 - 4. 학업성취 도달 여부 및 장단점(강의계획서의 졸업성과, 세부성과 및 시기성과를 활용한다)
- ②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교과목 교원의 판단하에)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은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학생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제3장 한의과대학 임상실습

제1절 한의과대학 임상실습 개요

제22조(목적)

제3장 1절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3학년, 4학년 학생(이하 “실습학생”이라 한다)이 임상실습에 참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환자의 존엄과 가치)

실습학생은 모든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가 인간 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성 및 책무)

- ① 실습학생은 실습 과정에서 최신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의료인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 실습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졸업 후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식과 임상술기, 기본술기를

학습하고, 수동적 실습 뿐만 아니라 능동적 실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25조(태도)

- ① 실습학생은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환자, 환자 보호자, 동료, 전공의, 교수 및 병원 직원들을 존중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술과 기본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 ② 실습학생은 환자들과 대화 시에 신분과 이름을 밝히고 정중히 대하여야 한다.
- ③ 진료목적을 가진 환자와의 교류는 반드시 실습 책임 교수 또는 교육담당 전공의의 지도·감독하에 행하여야 하며, 진료 범위를 벗어나는 사적인 교류는 절대 금한다.
- ④ 실습학생은 의료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금하며, 그 정도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희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환자 진료행위)

- 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습학생은 진료 과정상의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교육, 임상술기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실습학생의 모든 진료행위와 술기는 반드시 실습 책임 교수, 교육 전공의 또는 그 외 실습지도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지도와 감독 하에 시행해야 한다.
- ② 실습학생은 환자진료에 관한 모든 의료행위를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하여야 한다.
- ③ 실습학생이 수행하는 임상술기는 기본술기와 관찰술기로 구분되며, 기본술기는 실습 책임 교수 또는 교육담당 전공의의 감독 하에 실제로 경험하는 술기를 말하며, 관찰술기는 실습 책임 교수의 감독 하에 적어도 1회 이상 관찰하여야 하는 술기를 말한다.
- ④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제공된 지침서에 규정된 학생의사의 역할 및 진료 범위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기본술기는 지침서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며, 관찰술기는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환자군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⑤ 진료행위 중 실습학생의 참여로 인해 환자가 진료 중 불편감, 개인정보의 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
- ⑥ 대학과 병원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교육 및 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및 보고 체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⑦ 실습 학생은 전자의무기록(EMR)에 접근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임상실습에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실습학생은 환자와의 면담, 의료진 간의 대화, 환자의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알게 된 환자의 육체적, 의학적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가족력 등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 및 개인적인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감염예방 및 안전교육)

- ① 실습학생은 임상실습 전에 대학 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환자안전관리교육과 감염관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실습과정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 지체 없이 실습책임교수 또는 실습지도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병원 감염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③ 실습 중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육 과정 중 진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실습학생 또는 사실을 인지한 자가 반드시 실습 책임 교수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9조(용모 및 복장)

- ① 실습학생은 용모와 복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며, 환자 진료행위 중에 집중을 방해하거나 행동에 제한을 주는 용모와 복장을 금지한다
- ② 두발은 단정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지나친 염색, 지나친 장발 (행동 제한 및 감염 위험)은 금한다.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는 긴 머리카락은 묶어서 정리한다.
- ③ 복장은 단정하고 청결하게 한다. 상의는 셔츠와 블라우스, 하의는 어두운색 정장바지 또는 슬랙스, 면바지를 착용하며 지나치게 노출이 있거나 화려한 복장, 행동에 제한이 있는 거추장스러운 옷은 피해야 한다.
- ④ 가운은 청결하게 유지하며 과도하게 구겨지지 않도록 하고, 병원 밖에서는 입지 않는다.
- ⑤ 신발은 굽소리가 요란하지 않은 검정 또는 갈색 구두를 착용한다. 슬리퍼, 워커, 부츠, 굽이 지나치게 높은 구두를 신지 않으며, 맨발이 드러나는 샌들을 피한다.
- ⑥ 진료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소지품을 들고 다니지 않으며, 진료행위 중 사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제30조(임상실습에 대한 학생 피드백)

- ① 임상 각 과에서는 실습학생의 임상실습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를 평가하고, 해당 내용을 대학 및 병원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습학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학 및 병원은 향후의 임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외부실습(외부임상실습 등)에서도 실습학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대학과 병원은 향후의 외부실습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피드백은 임상실습이 종료되기 전 2주동안 각 과에서 수합할 수 있다.
- ④ 각 과에서는 임상실습 종료 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및 개선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⑤ 각 과에서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대조표와 수정된 차년도 임상실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적용범위와 징계)

제3장 1절은 병원내외 임상실습의 전 교육과정에 적용되며 위반하는 경우 경희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2조(기타)

제3장 1절에 포함되지 않거나 따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칙 또는 한외과대학 교육과정, 한방병원(한의원)의 학생 임상실습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

제2절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실습 교육**제33조(목적)**

제3장 2절은 경희대학교 한외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이하 실습학생' 이라 한다)(신교육과정 경우 본과 3학년 2학기 학생부터 본과 4학년 학생)의 CPX 실습 교육에 있어 교육의 질과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적용범위)

제3장 2절은 한외과대학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5조(CPX 교육 범위)

- ① 졸업 후 1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임상의학의 충분한 지식과 임상술기, 기본술기를 포함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시행한다.
- ② 임상의학이란 한방내과학, 침구의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의학, 한방재활의학(한의사전문의 8개 분과)을 포함하며, 약침학, 추나의학 등 지역의 요구, 관심과 전통에 따른 임상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본 과에서는 한방내과학, 침구의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의학, 한방재활의학(한의사 전문의 8개 분과)을 포함한 CPX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CPX 모듈 개발)

- ① 각 과의 CPX 모듈은 한국 한의약진흥원에서 개발한 CPX 모듈을 참고하여 개발한다.
- ② CPX 모듈의 개발 및 수정은 3년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임상술기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37조(CPX 교육 시행횟수)

- ① 임상술기센터는 CPX 모듈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CPX 교육은 연간 10개 항목 이상 시행할 수 있다. 단, 분과에 대한 사항은 제35조3항에 따른다.

제38조(CPX 환자)

- ① 임상술기센터에서는 CPX 교육을 표준화환자로 진행할 수 있다.
- ② 표준화환자란 효율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환자 역할을 훈련시켜서 행동하게 만든 모의 환자를 의미한다.

- ③ 환자 연기를 할 때 단지 환자의 병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 언어, 신체진찰 소견, 감정적/인격적인 특성까지 잘 나타내야 하며, 표준화환자는 CPX 모듈에 따라 개발된 시나리오 등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단,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표준화환자의 연기나 채점표 완성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경우 초보자(졸업생, 재학생, 대학원생 등)를 이용할 수 있다.
- ④ 표준화환자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진행한 사항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를 남길 수 있다.

제39조(CPX 평가자)

- ① CPX 평가자는 임상교수, 전공의, 표준화환자(동일 한의과대학(원) 소속 학생이 아닌 자) 중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표준화환자가 동일 한의과대학(원) 소속 학생일 경우, 임상교수 또는 전공의 중 1인 이상이 평가한다.
- ③ 필요 시 CPX 녹화 동영상으로 평가자 중 1인 이상이 학생에게 평가 또는 '피드백' 하는 것도 평가의 한가지로 인정한다.

제40조(CPX 시행 시간)

한 모듈 당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제41조(CPX 영상 촬영)

- ① 임상술기센터에서는 각 과별 CPX 실습 영상을 실습학생 1인당 연 1건 이상 저장할 수 있다.
- ② 영상은 표준화환자와 실습학생이 나오게 촬영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에 게시된 CPX 동영상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제3절 교외임상실습 운영

제42조(목적)

외부 우수 임상 의료기관 및 외래교수와 협력하여 급변하는 임상 현실을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실 적응력을 길러 진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3조(실습내용)

교외의 우수한 임상 의료기관 및 비임상기관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 교육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이들 기관에서 일정 시간 실습하도록 한다.

제44조(실습 시기 및 시수)

- ① 본과 4학년 1학기 실습이 끝난 후에 실시한다.
- ② 기간 : 1~8주(총 32시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 안에 32시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학점)

- ① 학점 없이 PASS/FAIL로 평가하여 졸업인증제로 시행한다.
- ② 해당기간에 PASS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사정 전에 언제든지 재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46조(실습 신청)

본과 4학년 학생은 교외임상실습 1개월 전에 대학에서 정한 임상 교육 협력 기관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협력기관)

- ① 협력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의원, 한방병원, 의원,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국가가 공인한 임상 한·양방 의료기관, 제약회사, 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 공공기관, 법률, 회계, 특허, IT 등 유관 기관. (실습학생 4인 이상의 교육가능 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과정위원회(이하 교과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인 이하도 가능함)

- ②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수 추천자, 외래교수 중 지원자, 실습학생 추천자를 교과위에서 심의하여 선정 (단, 외래교수가 아닌 경우, 관련 전공 교실의 자문을 구함.)
2. 추천을 받은 기관은 추천서, 실습 교육계획서, 임상 교육 협력 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다.
3. 심의에 통과한 경우, “경희대학교 한외과대학 임상 교육 협력 기관” 후보로 선정하고, 이 중 학생이 실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경희대학교 한외과대학 임상 교육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고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기관 지정 신청서는 실습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고, 교과위에서는 늦어도 1개월 전에 확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③ 기간

외래교수의 경우 외래교수 임용 기간으로 정하고, 외래교수가 아닌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비 지급

교육비는 학생이 실습을 신청하여 실제로 실습이 진행되는 기관에 한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 ⑤ 협력기관의 의무

협력기관은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외임상실습기관 임상실습지침서를 작성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교육하고, 임상실습지침서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대학에 보고한다.

- ⑥ 협력기관 지정취소는 다음과 같다.

1. 제47조 3항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정이 종료된다.
2. 기간 내라 하더라도 협력기관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대학의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사후 평가 및 관리)

- ① 학생은 실습이 끝난 후 실습보고서 및 협력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우수협력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대학은 실습보고서를 검토한 후 우수한 보고서를 선발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한의과대학 학생평가

제1절 CBT 시험에 관한 내규

제49조(목적)

제4장 1절은 한의과대학의 CBT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CBT 시험위원장)

제4장 1절의 시행관리에 있어 CBT 시험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한의학교육실장이 맡을 수 있다.

제51조(CBT 시험본부 구성)

CBT 시험위원장은 필요 시 운영을 위해 시험본부(행정실 및 교육실)를 두고, 본부 요원, 시험장책임자, 감독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한의학교육실에서 담당한다.

제52조(CBT 시험장 운영)

한의학교육실 시험위원장은 CBT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시설, 장비를 갖춘 시험장을 확보한다.

제53조(부정행위자 등의 처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정지시키며 퇴실 조치한다.
- ②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기준의 관리)

한의학교육실 시험위원장 출제기준, 문항 개발기준 또는 평가 목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문항개발 및 정리)

- ① 한의학교육실 시험위원장은 각 시험과목에 대하여 문항 개발을 교실별로 요청하고, 행정실 및 교육실의 협조하에 문항 은행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다.
- ② 각 문항은 아래의 사항을 담보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문항정리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시의성,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 2. 임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해력, 사고력, 응용력

제56조(출제본부의 구성)

한의학교육실 시험위원장은 출제관리책임관,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을 포함한 출제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57조(출제문항의 검토 및 관리)

- ① 출제문항은 아래에 따라 검토 및 관리될 수 있다.
 1. 출제위원 및 검토 위원 등 : 문제 선정 및 오류 가능성 검토
 2. 시험위원장 : 출제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제본부 : 문항은행 출제문항 후보 선정 및 검토
- ② 출제는 검토 후 최종 결정된 문항으로 하며, 그 외 문항은 문항은행에 보관한다.

제58조(중간, 기말시험의 운영)

각 교실의 주임교수들이 검토한 문항으로 「한의사 국가시험」 편제에 맞추어 구축한 문항은행 안에서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

- ① 출제위원은 각 교실의 과목 담당 교원들이 맡는다.
- ② 출제위원이 검토한 문항으로 「한의사 국가시험」 편제에 맞춰서 구축한 문항 은행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59조(이의제기)

출제위원은 이의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2절 한의과대학 성적경고 · 제적 및 학점인정

제60조(목적)

제4장의 2절은 학칙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의 성적경고, 제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대상)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경고를 한다.

1.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자. 단, 성적경고로 재수강하는 경우 재수강 과목의 성적과 직전 성적경고 학기의 학점 취득을 인정받은 과목의 성적(재수강과목 제외)을 합하여 평점평균을 산출한다.
2. 당해 학년의 평점평균이 2.00미만인 자
3. 당해 학기의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에 1과목 이상 과락이 있는 자
4. 위 1목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 2목 '당해 학년의 평점 평균'이란 정규학기(1,2학기)만 해당되며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2조(시기)

성적경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61조 1목 및 3목의 해당하는 자는 학기말에 한다.
2. 제61조 2목에 해당하는 자는 학년말에 한다.

제63조(과정진학)

- ① 한의예과생은 소정의 교양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본과에 진학할 수 있다.
- ② 제61조 2목 당해 학년 평점평균 2.00미만인 자는 전공과목을 수강하여 해당 평점평균을 취득하여야 본과에 진학할 수 있다.
- ③ 교양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 조건에 해당되어 진급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전공과목만을 이수하여 유급 요건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64조(성적경고자의 처리)

- ① 성적경고는 유급으로 간주하며, 연속하여 3회 이상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 ② 성적경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D학점이상 취득한 성적은 인정한다.
- ③ 단, 신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합당한 사유에 한해서만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64조의2(성적경고자의 재응시)

- ① 성적경고자는 학기 말 1회에 한하여 기말시험을 재응시 할 수 있다.
- ② 재응시한 기말시험 성적은 총점에 0.8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65조(성적경고로 인한 재수강)

- ① 성적경고로 인하여 일부 교과목 성적만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인정받은 학점과 재수강하는 학기의 학점을 합하여 23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② 재수강하는 교과목의 학점은 재수강 이전의 학점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7조(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부칙

- ① 제3장 2절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장 3절은 2022년 9월 5일 교외임상실습부터 시행한다.
- ③ 제4장 1절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④ 제4장 2절은 2020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둔다.
 1. 제4장의 2절은 시행일 이전에 성적경고를 받은 것은 본 내규에 의하여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복학 전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복학학기 또는 복학학기 이후의 교과목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강할 수 없다.
 3. 재수강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하급학기 또는 학년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총 이수학점에 지장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수할 의무가 없다.
 4. 학점 미취득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의 이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제4장 2절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제4장 2절은 2024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②항은 2025학년도 유급자부터 적용한다.

